

의안번호	제 345 호
의 결 연 월 일	2012년 6월 일 (제 311 회)

**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**

발 의 자	정지숙 의원외 6명
발의연월일	2012년 6월 4일

#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정지숙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4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2년 6월 4일

발 의 자 : 정지숙, 최병윤, 김영주,  
김양희, 박종성, 유완백,  
김봉희

## 제정이유

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충청북도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감면 조문 신설과 도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도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.

## 주요내용

### 가. 감면조항 신설

-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충북도민의 차량  
→ 「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신설  
(안 제5조제1항제7호)
- 도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(안 제5조제1항제8호)

##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

나. 관련부서 협의 : 행정국 총무과와 협의함.

나. 예산조치 : 없음.

다. 기 타

(1) 입법예고 : 해당사항 없음.

(2) 규제심사 결과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

##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7.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충청북도민의 차량
8. 충청북도 도민대상 수상자 차량
9. 그 밖에 도지사가 도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주차요금의 감면) ① (생략)</p> <p>1. ~ 6. (생략) (신설)</p> <p>(신설)</p> <p>7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</p> <p><u>각종 행사 등에 동원된 차량 및 방문차량으로 사전 통보된 차량</u></p>	<p>제5조(주차요금의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<u>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충청북도민의 차량</u></p> <p>8. <u>충청북도 도민대상 수상자 차량</u></p> <p>9. <u>그 밖에 도지사가 도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</u></p>
<p>부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	<p>부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